
「 『』
[2010. 3.19] [22075 , 2010. 3.15,]

() 02 - 2023 - 7576

1 ()

1 2(

) 「 『 (" ") 4 3 2 7

" " . < 2010.3.15 >

1.

2.

3.

• ") • • (• • • (")

[2009.3.18]

2 () 7 1 2 ("

") 1 , 2 . <

2004.6.25, 2009.3.18 >

<2004.6.25 >

• 1 2

. <

2008.2.29, 2010.3.15 >

. < 2008.2.29, 2009.3.18, 2010.3.15 >

3 () 10 7

1.

2.

3.

[2009.3.18]

3 2(•) 13 3 "

"

1.

2. 「 」 2

3.

[[2009.3.18](#)]

4 () 13 5 1 .

< [2000.7.22, 2004.6.25](#) >

1.

2. .

3. 가

4.

5. <[2004.6.25](#)>

4 2() 16 1 4 " "

1. : , ,

2. : 가 , 가

, , , ,

3. : 16 1 1 3 1 • 2

2 , , , .

[[2009.3.18](#)]

5 () • • 24 4 • 8 , 33

36 가

(" ") . < [2009.3.18](#) >

6 (• •)

25 1

• • (.)

1

1. ,

2. , ,

3.

4.

• • 25 2

1. 23

2. 24

3. 25 3 • (1 2

)

3 3

2

• • , 25 6

• • 3 25 2

• .< 2010.3.15>

• • 4 25 6

[2009.3.18]

7 () 26 1

가 (

) ()

< 2006.6.29, 2007.12.31, 2009.3.18 >

(

) 26 3

1

.< 2009.3.18 >

8 () 가 26 1

가 「 」 35

1 .< 2006.6.29, 2009.3.18 >

1 가 .< 2006.6.29 >

9 () 27 1 28 9 ,

(" ") 1

1

(互選) .< 2010.3.15>

1. :
2. : (" •
")
3. : ()

4

[2009.3.18]

10 ()

11 ()

.< 2008.2.29,
2009.3.18, 2010.3.15>

1. , • , • • 가
- 2.

12 ()

• • .< 2008.2.29, 2009.3.18, 2010.3.15>

13 ()

1 , , • • .< 2008.2.29, 2009.3.18, 2010.3.15>

14 ()

15 ()

• .< 2008.2.29, 2009.3.18, 2010.3.15>

16 () 27 2 28 9
(" ") 1 1

. < 2009.3.18 >

9 3 , 10 , 11 , 14 15 .
" " " " " " . " " " " . <
2009.3.18, 2010.3.15 >

17 (.) (" ")
) 37 1

. . ()
. .)

- 1.
- 2.
- 3.
- 4.

. . 37 2
1

2

. . 가

1. 가

2. 가
3 가 . . 2
가

[2009.3.18]

17 2() 37 2 1 " "

1. 「 」

2. 가,

3. 가 (「 」)

가)가

37 2 1

< 2010.3.15 >

[2009.3.18]

18 () 39 2

, . . .

. < 2008.2.29, 2009.3.18, 2010.3.15 >

- 1.
- 2.
- 3.

, . . . 39 4

. < 2009.3.18, 2010.3.15 >

19 () 44 1 "

.

- 1.
- 2.

44 1 3 5 , 2

. < 2009.3.18 >

- 1.

2. 「 」 2 1 , , 가

44 1

3 2 , .

3

44 1

2

, 3

20 () 45 1

, .

1. , .

2. .

3.

21 () 가 가 49
「 」 ,
. < 2004.6.25, 2009.3.18 >
1 가 가 「
」 . < 2009.3.18 >

22 () 가 50 1
「 」, 「 」
가 . < 2001.9.29,
2004.6.25, 2009.3.18 >
1 가 가 「
」 . < 2009.3.18 >
• • 1
• • . < 2008.2.29,
2009.3.18, 2010.3.15 >
• • 3
(가
) . < 2007.12.31, 2009.3.18 >

23 () 「
」 . < 2000.7.22, 2004.6.25, 2009.3.18 >
1. 가 •
2. <2000.7.22 >
3. • •
4. 13 1 3 6

24 () 54 1 • •
. < 2010.3.15 >
1. 10 1 가 가
2. 10 2 •
3. 11 , , 가
4. 20 가
5. 39 •
6. 59 1 1 5 ()
54 1 7 1 ()
) . < 2010.3.15 >

[2009.3.18]

25 (.) 59 1 3 .
, . . . 1 , ,
2 1 가 . ,가
59 1 .< 2010.3.15>

[2009.3.18]

< 22075 ,2010. 3.15>

1 () 2010 3 19 .< >

2 () <147>

<148>

1 2 3 , 2 5 , 11 2 1 , 12 , 13 1 , 15 , 16 3 , 18
1 2 , 22 3 , 24 1 . 2 , 25 2 ,
1 6 2 1 1 3 .1

1 .1 1 . 2

1 2 ,2 1 .2 1

" 가 " " " .

2 4 5 , 6 5 17 2 2 " 가 " " "

9 2 1 " 가 " " "

2 2 1 " " " "

<149> <187>

[별표 1] <개정 2010.3.15>

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(제2조제1항관련)

종 별	업무의 범위 및 한계	
	1.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.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.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·지도 및 상담	
상담	장산보관 임상심리사	1. 장산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.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
집, 병세에 대한 판단·분류	정신보건 간 호 사	1.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.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
사회조사 사업지도 및 방문지도	정신 보건 사회복지사	1.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2.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

전문요원의 자격기준(제2조제1항관련)

등급	정신보건임상심리사	정신보건간호사	정신보건사회복지사
1급	<p>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)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</p> <p>2.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,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</p> <p>3.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</p>	<p>1.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</p> <p>2.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취득후 정신 보건 시설,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</p> <p>3.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(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</p>	<p>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</p> <p>2.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정신 보건시설,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</p>

2급	<p>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)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</p> <p>2.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</p>	<p>1.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</p> <p>2. 「의료법」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</p>	<p>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</p>

※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·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[별표 3] <개정 2009.3.18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5조제1항 관련)

구 분	근거법령	위 반 사 항	과태료액(원)
1	법 제59조제1항제1호	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요양 시설의 폐지·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지·휴지 또는 재개를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	50만
2	법 제59조제1항제2호	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폐지·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지·휴지 또는 재개를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	50만
3	법 제59조제1항제3호	법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	80만
4	법 제59조제1항제4호	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	50만
5	법 제59조제1항제5호	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,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, 관계공무원·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·심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때	100만
6	법 제59조제1항제6호	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대우를 한 때	100만